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방법,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안 제2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별표 1의 표시 방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안 제3조)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가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대면 또는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등의 증표·서류를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

다.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안 제4조)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불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별표 1의 표시 방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를 직접 대면(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를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

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를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 다.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증표·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2.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서

제4조(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

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게시·통보 방법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표시(제2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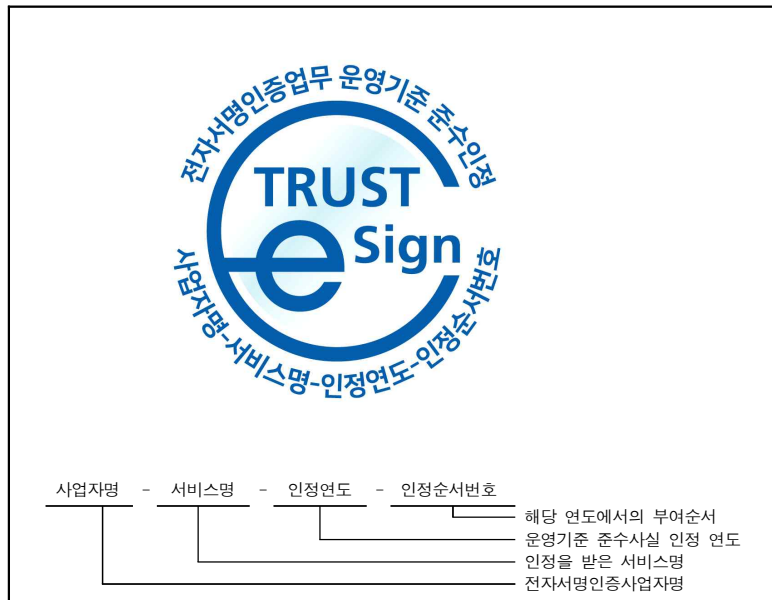
1. 인정번호 부여

가. 인정번호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부여한다.

전자서명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 0000 - 000

해당 연도에서의 부여순서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연도
인정제도명

2. 인정 마크



3. 운영기준 준수사실 표시 방법

가. 인정 마크는 인정을 발급받은 날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 마크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인정 마크는 지정된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흑백으로 사용하거나 표시된 인쇄물의 주된 단일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인정 마크의 크기는 표시물 대상의 크기나 표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이 다른 전자서명서비스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표시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서비스 외의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정 마크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연 락 처	(044) 202-6446